

■ 기본 서류 [모든 계약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(21.12.29)이후 발행분에 한함]

서류유형	해당서류	발급 기준	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	제출 확인
필수	해당			
○	무주택 서약서	본인	* 건본주택 비치	<input type="checkbox"/>
○	신분증	본인	*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	<input type="checkbox"/>
○	인감증명서 &도장	본인	*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(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)	<input type="checkbox"/>
○	주민등록표등본(상세)	본인	*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사항·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	<input type="checkbox"/>
○		배우자	*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※ 성명, 주민등록번호 (세대원 포함),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든 기재사항 표시	<input type="checkbox"/>
○	주민등록표초본(상세)	본인	* 성명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 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든 기재사항 표시	<input type="checkbox"/>
○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*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포함)를 표기하여 “상세” 로 발급 - 미혼, 이혼, 사별, 단독세대, 배우자 분리세대 등 배우자 유무 확인	<input type="checkbox"/>
○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*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“상세” 로 발급	<input type="checkbox"/>
○	출입국사실증명서	본인	* 현 거주지 및 거주기간 등 확인, 주민번호 전체 표시(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) - 발급기간 : 생년월일~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(주민센터 또는 민원24 발급가능)	<input type="checkbox"/>
○		세대원	*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(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) - 발급기간 : 당첨자의 생년월일~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(주민센터 또는 민원24)	<input type="checkbox"/>
○		직계존속	* 피부양 직계존·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- 발급기간 : 생년월일~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(주민센터 또는 민원24 발급가능) ※ 단,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- 직계존속 :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- 직계비속 30세 미만 미혼자녀 :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- 직계비속 30세 이상 미혼자녀 :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	<input type="checkbox"/>
○		직계비속		
○	복무확인서	본인	*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본 주택의 해당순위(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, 2순위)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,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자격으로 청약가능	<input type="checkbox"/>
○	해외 근무자 (단신부임)	-	*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조 제7항에 의거 당첨자(청약신청자)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(본인만)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[※ 해외근무자(단신부임) 입증서류]	<input type="checkbox"/>
○	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	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	*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,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(발급처 : 국민건강보험공단)	<input type="checkbox"/>
○	소득증빙서류 (서류 안내 참조)		*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빙서류 (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빙서류) - 「신혼부부·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」 참고	<input type="checkbox"/>
○	비사업자 확인각서		* 비사업자의 경우 (건본주택 비치)	<input type="checkbox"/>
○	혼인관계증명서 (상세)	직계비속	* 혼인신고일 확인 성명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“상세”로 발급 * 만 18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“상세”로 발급	<input type="checkbox"/>
○	주민등록표초본 (상세)	직계존속	* 청약신청자의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,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“상세”로 발급(1년이상의 주소 변동사항,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)	<input type="checkbox"/>
○	입양관계증명서 (친양자 입양 관계증명서)	본인 또는 배우자	* 입양의 경우	<input type="checkbox"/>
○	소득세 납부입증서류	본인	*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- 「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」 참고	<input type="checkbox"/>
○	부동산 소유현황	본인 및 세대원	* 소득기준은 초과하나,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 제출 * (발급기관) 대법원 인터넷등기소(www.iros.go.kr) > 등기열람/발급 > 부동산 > “부동산 소유현황” - 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, 발급 시 (주민)등록번호 공개에 체크	<input type="checkbox"/>
○	인지세	본인	* 수입인지 사이트(e-revenuestamp.or.kr), 우체국 또는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 후 계약서에 첨부	<input type="checkbox"/>

구분	해당서류	발급기준	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	제출확인
제3자대리신청서 추가제출서류	인감증명서,인감도장	본인	* 용도 : 주택공급신청 위임용(‘본인 발급용’에 한함,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불가) ※ 단,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(서명인증서)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	<input type="checkbox"/>
	위임장	본인	*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. (건본주택 비치)	<input type="checkbox"/>
	신분증,인감도장	대리인	* 대리인 지참	<input type="checkbox"/>
부적격통보를받은자	해당주택에대한소명자료	해당주택	* 등기사항전부증명서, 건축물대장등본, 무허가건물확인서, 건축물철거명실신고서 등 * 소형·저가주택등 임을 증명하는 서류(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) *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	<input type="checkbox"/>
	사업주체가요구하여인정하는서류	해당주택	*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	<input type="checkbox"/>

I 소득기준

공급유형	구분	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						
		3인 이하	4인	5인	6인	7인	8인	
소득기준 구분	우선공급 (기준소득, 50%)	130%이하	7,839,208원	9,222,467원	9,222,467원	9,611,741원	10,111,430원	10,611,119원
	일반공급 (상위소득, 20%)	130%초과 ~ 160%이하	7,839,209원~ 9,648,256원	9,222,468원~ 11,350,728원	9,222,468원~ 11,350,728원	9,611,742원~ 11,829,835원	10,111,431원~ 12,444,837원	10,611,120원~ 13,059,838원
추첨제 (30%)	소득기준 초과 / 자산기준 충족	160%초과 부동산가액 3.31억원 충족	9,648,257원~	11,350,729원~	11,350,729원~	11,829,836원~	12,444,838원~	13,059,839원~
	1인 가구	160%이하	~9,648,256원	~11,350,728원	~11,350,728원	~11,829,835원	~12,444,837원	~13,059,838원
		160%초과 부동산가액 3.31억원 충족	9,648,257원~	11,350,729원~	11,350,729원~	11,829,836원~	12,444,838원~	13,059,839원~

- ※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→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+ {1인당 평균소득(384,376) * (N-8), 100% 기준} ※ N → 9인 이상 가구원수
- ※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(만19세 이상)의 합산 소득입니다(단, 세대원의 실종·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).
- ※ 월평균소득은 [연간소득÷근무 월수]를 말하며,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(21번)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,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, 근무 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상의 근무 월수,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.
- ※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하되,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(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)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**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**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.
- ※ 1인 가구 신청자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청약자격을 만족하는 것으로 봅니다.

II 자산보유기준

구분	자산보유기준	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												
부동산 (건물+토지)	3억3,100만원 이하	건축물	<p>*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적용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colspan="2">건축물 종류</th> <th>지방세정 시가표준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>주택</td> <td>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, 다세대)</td> <td>공동주택가격(국토교통부)</td> </tr> <tr> <td>단독주택</td> <td>표준주택가격(국토교통부) 또는 개별주택가격(시·군·구청장)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>주택 외</td> <td>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격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건축물 종류		지방세정 시가표준액	주택	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, 다세대)	공동주택가격(국토교통부)	단독주택	표준주택가격(국토교통부) 또는 개별주택가격(시·군·구청장)	주택 외		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격
		건축물 종류		지방세정 시가표준액										
주택	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, 다세대)	공동주택가격(국토교통부)												
	단독주택	표준주택가격(국토교통부) 또는 개별주택가격(시·군·구청장)												
주택 외		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격												
토지	<p>*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(표준지·개별공시지가)에 면적을 곱한 금액.</p> <p>단, 아래 경우는 제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농지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·구·읍·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- 「초지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「축산법」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- 공부상 도로, 구거,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- 종중소유 토지(건축물을 포함)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,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(예정)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<p>*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(상가, 오피스텔 등)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 (개별공시지가 기준)</p>													

* 토지 = 공시가격 * 건축물 = 시가표준액 * 토지 + 건축물 = 3.31억원 이하

* 자산보유기준 증빙서류 확인방법 :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> 등기열람/발급 > 부동산 > 부동산 소유현황(소유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)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체크

소득증빙서류 (※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송부 받은 경우 인정불가)

해당자격		소득입증 제출서류	발급처
근로자	일반근로자	- 재직증명서(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 표시) -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(매월 신고 납부대상자 확인발급) (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: 전년도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)	• 해당직장 • 세무서
	신규취업자 / 금년도 전직자	- 재직증명서 -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※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,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	• 해당직장
	전년도 전직자	- 재직증명서 -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※ 근무처 별 소득명세표상 “주(현)” 총 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	• 해당직장
	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(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)	-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(원본) - 사업자등록증 사본 -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(근로소득지급명세서) ※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 직인날인 필수	• 해당직장
자영업자	일반과세자/간이과세자/ 면세사업자	- 사업자등록증 사본 -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	• 세무서
	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	-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-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및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,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(부분) ※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 제출	• 세무서
	신규사업자	-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원등기부등본(원본) -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및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,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(부분)	• 국민연금관리공단 • 세무서 • 등기소
	법인사업자	-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원등기부등본(원본) -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서(원본)	• 세무서 • 등기소
보험모집인, 방문판매원	-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(원본) -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- 재직증명서	• 세무서 • 해당직장	
국민기초생활 수급자	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	• 주민센터	
비정규직 근로자/ 일용직 근로자	-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(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) -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(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) ※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(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)에 사업자 직인날인 필수	• 해당직장 • 국민연금관리공단	
무직자	- 비사업자 확인 각서(별도서식 견본주택 비치) ※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/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(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)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 입증서류제출 - 소득이 없는 경우 전년도 사실증명원(신고소득사실없음)	• 견본주택 • 세무서 또는 홈텍스	

III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인증 서류

서류구분	확인자격	증빙 제출서류	발급처
자격 입증서류	근로자	- 재직증명서 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	• 해당직장 • 세무서 • 건강보험공단
	자영업자	- 사업자등록증 사본 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	
	근로자,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	-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 (납부내역증명 포함) ※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	
소득세납부 입증서류	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(근로자, 자영업자,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)	-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(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) 및 납부내역증명서 (종합소득세 납부자)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(원천징수영수증)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	• 세무서 • 해당직장